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소 방 공 무 원 임 용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부지사에서 소방본부장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파견인력 운영과 업무대행소방공무원 지정을 위하여 파견사유별 파견기간과 업무대행소방공무원 지정사유 등을 다른 국가직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편,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3.4.11.)됨에 따라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결원보충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파견 공무원의 정원이 파견 받는 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파견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파견하고 그 사실을 사후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청차장이”를 “소방청 차장이”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필요한 기간”을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의4제1항 본문 중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선택제 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을 “(제3호)로, “그 소속”을 “소속”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육아휴직”을 “휴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휴가”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로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병가 도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3. 시간선택제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가와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병가기간 중에 해당 병가와 연속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병가와 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질병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산휴가와 같은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⑦ 출산휴가기간 중에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출산휴가일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경우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⑧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속하여 출산휴가(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날부터 남은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일(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4장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직제상 파견) 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3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건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소방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u>소방청차장이</u> ,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소방청 차장이</u> ----- ----- ----- <u>소방본부장</u> ----- ----- ----- ----- ----- -----.
제30조(과건근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과건기간은 2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과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과건기간은 1년 이내. 다만,	제30조(과건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과건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과건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과건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과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
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③ ~ ⑤ (생략)

제30조의4(출산휴가자 또는 육아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
나 시간선택제 전환소방공무원
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
의 업무(시간선택제 전환소방공
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전
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정한다)를 그 소속 소
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
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가
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
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선
택제근무로 인하여 제30조의3
제3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_____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의4(출산휴가자 또는 육아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제3호) -----

----- 소속 -----

----- 휴직 -----

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 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3. 시간선택제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② -----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 ①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④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가와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병가기간 중에 해당 병가와 연속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병가와 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질병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산휴가와 같은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⑦ 출산휴가기간 중에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출산휴가일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경우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⑧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속하여 출산휴가(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날부터 남은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일(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다)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32조(직제상 파견) 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

에서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
 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
 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
 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소
 방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
 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
 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
 킬 수 있다.

② 제3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
 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
 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
 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
 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
 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
 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7044